

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[별표 2] <개정 2024. 1. 16.>

필기시험 과목(제8조제1항 관련)

1. 일반조종면허

과목	출제 범위	과목별 배점
가. 수상레저안전	1) 수상환경(조석 및 해류) 2) 기상학 기초(주의보·경보 등의 기상통보 및 일기도 읽기) 3) 구급법(생존술·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) 4) 각종 사고 시 대처방법 5) 안전장비 및 인명구조	20점
나. 수상레저기구 운항 및 운용	1) 운항 계기 2) 수상레저기구 조종술 3) 신호음향 및 조난 4) 모터보트·견인기구·수상오토바이의 원리 및 운용	20점
다. 기관	1) 내연기관 및 추진장치의 구조 2) 기구의 정비 및 취급방법 3) 기구의 연료유·윤활유·냉각수 계통 관리	10점
라. 법규	1) 「수상레저안전법」 2) 「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」 3)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4) 「해사안전기본법」 및 「해상교통안전법」 5) 「해양환경관리법」 6) 「전파법」	50점

2. 요트조종면허

과목	출제 범위	과목별 배점
가. 요트활동 개요	1) 해양학 기초(조석·해류 및 파랑의 이해) 2) 해양기상학 기초(해양기상의 특성, 기상통보 및 일기도 읽기)	10점
나. 요트	1) 선체와 의장 2) 돛[범장(帆裝)]과 기관 3) 전기시설 및 설비 4) 항해장비, 안전장비 및 인명구조 5) 생존술	20점
다. 항해 및 범주	1) 항해계획과 항해(항해정보, 각종 항법) 2) 범주 및 피항(避航) 3) 식량과 조리·위생	20점
라. 법규	1) 「수상레저안전법」	50점

	2) 「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」 3)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 4) 「해사안전기본법」 및 「해상교통안전법」 5) 「해양환경관리법」 6) 「전파법」	
--	--	--